

의안번호	2207340
의 퇴 인	신영대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6.
추계번호	25A0158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8(소상공인의 의료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8(소상공인의 의료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2조의8에 따라 국가 등이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,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안 제12조의8제1항과 관련하여 현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“일반건강검진에 추가하여 다른 검사들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”¹⁾

1)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동주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103127호) 검토보고」, 2020. 9.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안 제12조의8제1항과 관련하여, 개정안의 지원대상자는 현재 무료로 시행되는 건강검진 외의 검사를 추가로 받는 소상공인이나 그 수를 추정할만한 자료가 미비함
- 안 제12조의8제2항의 건강검진 수검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지원의 경우, 건강검진 수검 소상공인의 매출액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또한, 건강검진 비용 및 손실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구체적인 지원 수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(안 제12조의8제3항)
- 참고로, 2023년 기준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,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은 1,746만명, 암검진은 1,393만명 등이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건강검진비는 일반건강검진 6,778억원, 암검진 1조 2,467억원 등임

[표 1] 건강검진 수검인원 및 검진비(2023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	수검인원	검진비
일반건강검진	17,462,244	677,824
암검진	13,931,731	1,246,657
영유아 건강검진	1,769,726	60,161
구강검진	6,847,085	61,492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『2023 건강검진통계연보』, 2024. 12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